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(경정 1명, 경감 1명, 연구사 1명)을 증원하고, 경찰청 소속기관에 스토킹 범죄 등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2명(경위 12명, 경사 18명, 6급 12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2. 00. ~ 2025. 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1,887”을 “1,890”으로 하고, 경찰공무원 계 “1,220”을 “1,222”로 하며, 총경 이하 “1,200”을 “1,20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663”을 “664”로 하며, 4급 또는 총경 이하 “636”을 “637”로 한다.

별표 5 중 총계 “134,174”를 “134,216”으로 하고, 경찰공무원 계 “129,748”을 “129,778”로 하며, 총경 이하 “129,647”을 “129,67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,332”를 “4,344”로 하며, 4급 또는 총경 이하 “4,311”을 “4,32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4]

경찰청 공무원 정원표(제63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887</u>	<u>1,890</u>	+3
경찰공무원 계	<u>1,220</u>	<u>1,222</u>	+2
·	·	·	
·	·	·	
총경 이하	<u>1,200</u>	<u>1,202</u>	+2
일반직 계	<u>663</u>	<u>664</u>	+1
·	·	·	
·	·	·	
4급 또는 총경 이하	<u>636</u>	<u>637</u>	+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5]

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64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34,174</u>	<u>134,216</u>	+42
경찰공무원 계	<u>129,748</u>	<u>129,778</u>	+30
·	·	·	
·	·	·	
총경 이하	<u>129,647</u>	<u>129,677</u>	+30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4,332</u>	<u>4,344</u>	+12
·	·	·	
·	·	·	
4급 또는 총경 이하	<u>4,311</u>	<u>4,323</u>	+12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2